

대법원 2024. 5. 30 선고 2024재다45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5. 30 자 2024재다458 결정

대법원 2024. 2. 8 자 2023재다642 결정

전문

원고(재심원고) A

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

피고(재심피고) C (개명 전 성명: D)

판결 선고 2024. 5. 30.
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3재다642 판결

주문
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이동원, 대법관 김상환, 주 심 대법관 권영준, 대법관 신숙희